



피고인 및 그 변호사가 보유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법원의 제출 명령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 사건

28

Heddon v. State, 786 So.2d 1262 (2001)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플로리다 주 (Florida) 제 2 지방 항소법원	사건번호	2D00-4750
판결 일자	2001.06.15	판결 결과	전부 인용
원고 (피항소인)	데이비드 헤돈 (David Heddon)		
피고 (항소인)	플로리다 주 (State of Florida)		
참조 법령	Section 812.081, Florida Statutes (1999); Section 90.502, Florida Statutes		
참조 판례	Briggs v. Salcines, 392 So.2d 263 (Fla. 2d DCA 1980)		
영업비밀	고객 목록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고객목록, 자기부죄금지, 변호사-의뢰인 특권		

02 사건 개요

원고가 웨스트월드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West World Telecommunications Systems, Inc.)을 퇴사한 후, 웨스트월드는 주 검사에게 원고가 웨스트월드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주 정부는 이를 조사하면서 원고의 회사에게 소환영장(subpoena)을 발부하여 다양한 기록을 받았다. 또한 주 정부는 원고의 전 변호사에게도 소환영장을 발부하여 원고가 제공한 모든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전 변호사는 변호사-의뢰인 특권 (Attorney-client privilege)을 주장하며 지방법원에 소환영장 취소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이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원고가 보유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자기부죄 금지 원칙을 명명한 수정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음)

원고가 변호사에게 제공한 문서는 변호사-의 퇴인 특권에 의해 보호받는다.

04 판결 요지

플로리다 영업비밀법에서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할 의사로 영업비밀과 관련 있는 물건을 절취, 횡령, 복제하는 행위를 3급 중죄(felony)로 처벌한다. 만일 원고가 웨스트월드의 고객 목록 원본이나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문서의 제출은 목록의 존재와 원고의 점유를 시인하는 의미이므로 증언적 증거(testimonial evidence)에 해당하고, 이는 수정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

또한 원고가 법률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그러한 문서를 제공하였다면 그 문서는 변호사-의퇴인 특권¹⁾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이에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지방법원에 주 정부의 소환영장을 취소시킬 것을 명한다.

05 Key Point

이 사건은 자기부죄 금지(自己負罪禁止)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진술이나 증거 제출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과 변호사에게 공개한 정보나 증거는 변호사-의퇴인 특권에 따라 법원이 공개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형사 절차에서, 또는 제3자의 영법비밀 침해로 인하여 법원에 관계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